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서

1. 신고인 = 매수인 (개인, 법인)

성명	개인		주민번호	
	법인		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자 택		이메일	

2. 피신고인 = 매도인 (개인, 법인)

상호(성명)				
대 표 자		주민(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 대 폰		사 무 실	
소개자(1)	이 름		직 책	
	휴 대 폰		신고인과 관계	
영업자(2)	이 름		직 책	
	휴 대 폰		인상착의 등	

(1) 소개자는 최초로 신고인 측에게 접촉하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자

(2) 영업자는 통상 소개자의 상급자로서 사무실 등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하거나 현장 답사를 수행하면서 개발 관련 브리핑을 한 자 또는 실질적인 기획부동산 운영자

3. 신고 내용(피신고인과 다수의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1 물건 당 1장씩 별도 작성)

매매 물건(지번)	
계 약 일 자	
계 약 장 소	
매 매 금 액	
위 매매물건의 구체적 개발호재 (도로개설, 지하철개통, 아파트, 전원주택, 산업단지 조성 등)와 매입 후 수익 전망 및 원금보장 등의 설명내용과 이를 설명한 사람	
이 매매거래가 불법(사기 등)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입 증 자 료 첨 부	매매계약서, 관련자 명함, 기타 피신고인의 위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게시물, 전단지, 문자나 카톡메세지, 통화 녹취록, 목격자 확인서 등)

202 년 월 일

신고인 : (자필서명, 날인)

경기도지사 귀하

-작성 요령과 안내 사항-

1.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개인, 법인으로 구분 표시하고, 신고인은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피신고인은 매도인을 기재(소개자가 동일인이더라도 매도인이 다를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기재)

2. 신고인, 피신고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일 경우에는 상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

3.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에 여러 건의 매매계약이 있을 경우 각 물건의 매매계약일자 순으로 1장씩 신고내용을 작성(예, 신고내용(1), 신고내용(2), 신고내용(3).....)하고, 해당거래의 매매계약서와 기타 입증자료를 신고내용에 맞게 첨부

4. 매매물건의 구체적 개발 호재는 피신고인 측이 매매물건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5. **피신고인의 기망행위**는 피신고인 측의 매매물건 개발호재에 대한 설명내용이 법규상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특성 상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고인에게 거래상의 중요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거나 허위사실을 고지하여 신고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점을 기재.

6. 이 신고서를 신고인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날인

7. 이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없음

8. 제출한 신고서 내용을 검토 후 피신고인에게 위법(사기 등) 소지가 있을 경우 관할 경찰청에 수사요청

9. 제출처

- (우편)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15층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이의동, 경기도청)
(팩스 : 031-8008-2359, 이메일 : kspyo79@gg.go.kr, 문의전화 : 031-8008-5357,5359)